

98
7/27

Ial.27.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의 공개 및 향후대책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일 시 : 1992. 6. 2. 08:30

장 소 : 기독교회관 6층 소회의실

차 례

I 반박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경위	2
II 반박보고서의 내용 (요약)	별첨
III 향 후 계획	3
IV 정부와 국회 및 국민에 대한 견의	3

별첨 : 1. 반박보고서의 내용 (요약)

2. 반박보고서 전문

I. 반박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경위

정부는 1990. 7.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국제조약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흔히 “A규약”이라 불림)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흔히 “B규약”이라 불림)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이 규약들은 조약의 효력에 관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B규약의 제40조는 신규 가입국으로 하여금 그 가입 후 1년 이내에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이러한 권리가 향유되도록 함에 있어 성취한 진전사항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91. 7. 그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B규약은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B규약에 의해 창설된 기구로서 유엔 인권위원회와는 별개임)가 위와 같은 정부보고서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통상 1년에 3회 열리는 회의에서 당해 국가의 대표를 출석시켜 정부보고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그 응답을 들은 뒤 이사회의 의견을 작성한다.

인권이사회는 당초 1992. 3.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최초보고서를 검토하기로 했으나, 한국 정부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확인된 일정에 따르면 7. 13과 7. 15 이를 동안 일반인의 방청이 허용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 대표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교회협 인권위)는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인권이사회로 하여금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권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충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동으로 독자적인 보고서(반박보고서)를 만들어 1992. 5. 8 인권이사회에 발송했다.

교회협 인권위와 민변은, 인권이란 인류가 공동으로 옹호하고 신장해야 할 사항이며 정부도 위 규약들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인권상황을 국제무대에서 올바르게 평가받아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반박보고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은 국익과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작업을 진행했다. 위 규약들에 가입한 외국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 나라의 인권단체들이 그들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담은 반박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오고 있다.

II. 반박보고서의 내용 (요약)

별첨

III. 향후 계획

1. 우리 두 단체는 7월의 제네바 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반박보고서의 내용을 주지켜 하는 활동을 벌이고 회의를 방청할 예정이다.
2. 우리 두 단체는 반박보고서와 위 회의 방청기 등을 출판하겠다.
3. 우리 두 단체는 위 인권이사회를 전후해서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등 여론형성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
국내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위치
4. 우리 두 단체는 국제인권규약(B 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 당한 국민이 B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규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

IV. 정부와 국회 및 국민에 대한 건의

1. 우리 두 단체는 정부(법무부)에 대해 위 인권이사회가 열리기 전 적당한 시기에 정부보고서 및 우리의 반박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주요쟁점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의한다.
2. 우리 두 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국제인권규약과 정부보고서 및 우리의 반박보고서를 검토해 위 규약에 어긋나는 제반 법률의 개정·폐지, 관련제도의 개선, 권리를 침해 받은 국민에 대한 구제방법의 부여 등 위 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두 단체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지닌 제 단체가 위 인권이사회에 방문단을 파견하는 등 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II. 반박보고서의 내용 (요약)

1.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2
2.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3. 국내법에서 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4.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6
5. 비상시의 기본권 제한	7
6.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
8. 국가보안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	14
9. 사상과 양심의 자유	17
10. 표현의 자유	18
11.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19
12. 참정권	20
13. 생명권	21
14. 고문 등의 금지와 신체의 자유	22
15. 재소자의 인도적 처우	25
16.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의 금지	29
17. 거주·이전의 자유	31
18.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32
19. 여성에 대한 차별	33
20. 결사의 자유	34

II. 반박보고서의 내용 (요약)

1.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로 인정받아 왔다. 우리 현대사는 불법적인 체포, 감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을 통한 투옥, 심지어는 실종 및 의문사로 얼룩져 있다. 1948년이후 9번에 걸쳐 개정된 헌법과 법률들은 언제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권조항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정부와 법원은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축소하여 해석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넓게 해석하여 많은 인권침해들을 정당화해 왔다. 그런 반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나. 반면에 정부는 민주화가 실현되었으며 인권문제도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한 것을 환영하며,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검토를 받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고 국제적인 토론과 비판을 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국내의 법과 법원의 판결, 정책의 률에 얹매이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에서 규약의 조항과 관련된 한국의 법조문을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규약에 정한 인권의 보장과 관련된 법체계를 완전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으며 인권에 영향을 주는 법원의 판례나 정부의 조치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보고서에는 실제의 인권보장상황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규약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에 관한 설명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는 규약이 보장하는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다. 그러나 이사회는 정부의 보고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고의무는 단지 규약에 정한 의무와 관련된 법률과 규범들을 열거하는 것 뿐 아니라 법원 및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과 판결들,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고 향유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관련된 사실들, 달성한 성과들과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요소와 장애들을 모두 포함한다.”

라. 이와 같은 정부보고서는 인권이사회와 우리 정부 사이에 건설적인 대화를 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며 규약의 목적과 이사회와 검토회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독자적인 보고서를 이사회와 위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정부보고서의 결함을 보완하여 이사회가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에서 원래의 뜻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가. 우리나라에서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와 장애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분단조건 하에서 반공 또는 반북한의 이데올로기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일련의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억압적인 법률들이 만들어졌고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과 행동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정부와 북한정부의 관계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북한지역을 법률상 남한의 영토라고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남한정부에 대하여 “국토를 침탈하고 국가를 변란하기 위하여 불법구성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 다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연합의 공동회원국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이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 한 북한을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남북합의서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와 법원은 북한에 대한 과거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나. 한번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농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빈민으로 생활하면서 산업예비군으로 남게 되었다. 정부는 노동운동을 공산주의적인 것 또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난해 왔다. 근로자들과

도시서민들의 권리주장과 행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찰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다. 또 다른 장애요인의 하나는 헌법의 권위와 규범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헌법은 제정공포된 이래 9차례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중 두번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또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집권자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법원도, 일반 국민들도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는 군사쿠데타 등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법률들이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61년의 군사쿠데타 이후에 박정희장군이 구성한 “국가재건최고회의”, 1971년 박정희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기능을 침해하고 구성한 “비상국무회의”, 198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장군이 구성한 “국기보위입법회의” 등이 그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많은 법률들을 만들어 공포했으며 지금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조금도 다름없이 정당한 법인 것처럼 정부와 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다. 그 법률의 수는 수백개에 달하며 인권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률들 및 국가권력의 조치와 행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률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이란 집권자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된 경우에도 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행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의 경우에 야당과 여론이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에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의원들이 토론과 표결을 거치지 않고 날치기의 방법으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 법률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법률안을 토론을 통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대신 행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을 어떤 수단을 쓰든지 통과시키고 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많은 법률은 그 구성요인이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인정보규정등은 매우 막연하여 국민들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알 수 없게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들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아주 드물게 인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기관의 공정성이 일반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정은, 한국에서 규약이 보장한 인권을 누리기 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의 하나이다.

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수사기관 또는 비밀경찰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안전기획부이며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산주의자나 북한을 돋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람을 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때로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구속하고 고문을 자행하기도 한다. 반정부적인 지식인이나 활동가는 물론, 야당의 국회의원과 여당의 정치인들조차도 이들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저지르는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통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안기부는 수사업무외에 정치에도 직접, 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거에서는 야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는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감독을 받지 않게 되어 있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하여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관은 국민과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군림하고 있다.

3. 국내법에서 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가. 정부보고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정부와 법원에 의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의미에 관하여는 통일된 견해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규약이 일반적인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국내법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이는 규약보다 나중에 제정된 국내법에 의하여 규약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나. 우리나라에서 규약의 효력발생과 내용이 국민들에게는 물론 정부와 법원 등 법집행기

관에 까지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법원은 실제로 인권침해가 문제 된 사건에서 규약을 직접 적용하여 국내법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표현의 자유가 문제된 국가보안법사건들, 제3자 개입금지 사건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서 규약을 적용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이 규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공정적으로 판단한 일은 한번도 없다. 또 규약이 효력을 발생한 1990년 7월 이후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

다. 결론적으로 규약을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여 적용하기 위한 정부와 법원차원의 노력은 아직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4.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조

가. 수사 및 소추를 통한 구제

검찰, 경찰, 안기부 등 모든 수사기관은 행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장관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그리하여 범죄에 대한 수사와 소추 여부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가해져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사·소추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법상 사법적 통제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재정신청절차이다. 1970년대 초까지는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73년 1월 당시 국회 대신에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던 비상국무회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정신청의 대상을 수사공무원의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등 극히 일부의 범죄로 제한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또 하나의 통제수단은 헌법소원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실제 활동을 시작한 1988년 9월 이후 1991년 12월 31일 까지 검사의 불기소결정 9건을 취소했다. 그 후 검사가 당초의 결정을 바꾸어 기소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사기관들은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공정하며 인권옹호적인 태도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며 (사례 : 수서사건, 노태우대통령의 불우이웃성금수수, 박종철고문치사·은폐사건), 범죄혐의자의 계급이나 정치적 태도에 따라 차별대우한다.

수사기관의 인권의식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낮다. 한국에서 수사기관의 활

동을 통해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려우며 그 개선책으로 특별검사제도가 꾸준히 제안되고 있다.

나. 법원의 재판을 통한 구제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조)

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

헌법재판소는 상당수의 법들을 위헌으로 판정해 무효화하였고 많은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활동은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을 권리구제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정립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권리구제는 가장 심하게 인권을 탄압한다고 비판받아 온 핵심적인 반민주적 법률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명백하게 제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국가보안법의 친양·고무죄 조항에 대해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을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국가보안법의 막연한 구성요건에 또하나의 막연한 해석기준을 덧붙인 것에 불과해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 1월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1년 7월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5. 비상시의 기본권 제한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4조

가. 계엄

역사상 비상계엄은 실제로는 군부가 쿠데타에 의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거나 독재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국민의 저항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었다. 이같이 계엄선포권이 남용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왔음에도 사법부는 그에 대해 아무런 구제방법도 제공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60년대 이래 1982년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법부에는 그 당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단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하였다. 이같은 사법부의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이는 규약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수령과 전투경찰대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있는 위수령은 싱위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군 부대의 장이 병력을 출동하여 경비 및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같이 출동한 군인이 민간인을 체포하고 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영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해 또는 비상사태를 빙자해 병력이 출동해 인권침해를 일으킬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이 개최하는 집회나 시위는 주로 전투경찰대에 의해 진압된다. 전투경찰대는 사실상 군대와 다름 없다. 그들은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면서 그 참가자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1991년 4월 대학생 강경대가 시위도중 전투경찰대원에게 쫓겨 도망하다가 끝까지 추격해 온 전투경찰대원들에게 불집혀 쇠몽둥이로 구타 당해 숨진 일도 있다.

위수령과 전투경찰대는 계엄의 선포에 의하지 않고도 군대 또는 사실상 군대와 다름 없는 전투경찰대로 하여금 치안을 유지케 하는 규정 및 제도이다. 특히 전투경찰대는 상설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항구적인 계엄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수령과 전투경찰대 제도는 비상사태의 경우 기본권의 제한은 그 상황의 긴급성으로 말미암아 엄격히 요구되는 헌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약 제4조 제1항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6.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조, 제14조

가. 사법권 독립의 실상

사안의 성질상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 정도를 증거에 의해 계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독립의 실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안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공정한 심판자로 행동하기보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주장과 입증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것인지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많다. 공안검사가 내세운 공소사실은 거의 예외없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된다. 법원판결에 기재되는 범죄사실은 사실상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빈번히 부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기하는 증거신청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꺼린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공안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 죄형법정주의가 부인되는 것도 일상적이다. 국가보안법과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범죄 구성요건을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대표적 형벌법규이다. 법원은 이 형벌법규 위반이 문제가 되는 공안사건을 처리하면서 막연한 규정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살리기는 키녕 도리어 공안검사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광범위하게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에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 미리 구형량을 정해 놓는다. 공안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거의 예외없이 검사가 제시한 형량의 40-6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이 사실은 법원이 형량의 결정에 있어 공안검사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으며 공소가 제기된 뒤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를 위한 노력이 부질 없음을 의미한다. 공안사건에 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거의 100% 발부한다. 공안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법부가 공안사건이 아닌 통상의 사건도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1%도 안되는데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검찰이 매우 공정하다는 것과 법원이 검찰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등 2가지 가능성 중 어느 하나가 진실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자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국민과 법조인 사이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져있다.

나.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

6공 이후에도 사법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발전의 수준과 긴밀하고 복잡하게 연관돼 있어서 그 요인을 단지 사법부 자체의 구성과 운용을 규율하는 단편적인 법과 제도의 미비에 있다고 보아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현재의 사법부가 독립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과거에 독재세력과 협력했던 법관들이 1988년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고위직 또는 중견 법관으로 과거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사법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들 중의 다른 하나는 그 인사제도의 결함이다. 법관의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하고 관료적인 법관의 승진 이동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하나의 요인은 검찰의 영향이다. 검사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판결·결정을 내리지 않는 법관에 대해 간혹 그들이 가진 수사권을 이용해 위협을 가한다.

다. 재판의 공개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공개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흔히 있다. 또한 증인신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번론과 증거조사가 법정 밖에서 서면으로 행해지고 있어 법정에서 방청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소송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행이 생긴데에는 법관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라. 무죄추정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을 사실상 유죄로 추정하는 빌류과 관행이 존재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대부분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수감된 지와 거의 같은 대우를 받는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그들만이 입게 돼 있는 품위 없는 제복을 입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제280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체 재판을 진행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강도죄,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한 죄등 “특정강력범죄”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실제상 “특정강력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그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불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갑과 포승으로 때로는 가죽으로까지 온몸을 묵인 체 교도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재판을 받는 일이 많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검사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던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석방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31조 단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기 전부터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기 쉽다.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기 수일 전에 수사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법원은 그 서류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결정되기도 전에 그것들을 검토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단을 가질 수 있다.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의심의 이익(benefit of doubt)을 누린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중 약 99 %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

는다는 사실이 이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의자는 수사의 필요라는 구실 아래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기소된 경우 직위를 박탈 당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기소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0년 11월 19일 이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90헌가48 결정).

마. 혐의사실의 고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그보다 앞서 그에게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등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상 경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방어권의 보장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한 변호사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 변호인 선임을 바라는 피의자·피고인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얻어 방어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 아닌 사람의 견해는 자극히 제한돼 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공안사건의 경우에는 구치소 등의 당국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접견자와 정치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친족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것을 제멋대로 금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공판조서를 열람하는 것 이외에 소송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거의 모르는 채 심판을 받는 수가 있다.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검시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측은 검사가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는 그것을 검토할 수 없다. 구속기간의 제한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아래에서 뒤늦게 검사 즉 증거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피고인 측은 방어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신문은 대부분 유도신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은 주로 서류에 의존해 이루어짐으로써 진실과 면 판결이 선고될 우려가 크다. 특히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증거서류가 우월한 증거가치를 인정받게 돼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

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한 증거서류에 의해 유죄의 심증을 얻게 된 법관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을 꺼리는 수가 많다.

사. 피고인의 출석권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 등 “반국가행위자”가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원래의 법에 정해진 형벌에 몇번여 재산을 몰수하기까지 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증인신문권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있어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와 변호인의 출석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규약에 위반된다.

형사소송의 실체를 보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의 소재가 재판 당시에 불명해지는 경우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을 신문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 채 그 진술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점 역시 인권규약의 정신에 어긋난다.

자. 자백의 강요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구속수사와 구속재판이 진행으로 돼 있고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장기간 구속돼 외부의 감시로부터 차단된 상태로 자백을 강요 받는 수가 많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집행유예 기타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기 위해 범행을 자백하고 방어를 포기해야겠다고 결심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9조 제2항, 제14조 제3항 (b), (d)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모습은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자체를 수사기관이 거부하는 경우, 접견을 여러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그리고 접견의 비밀을 침해하고 변호인과 피의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변호인의 접견권이 침해되는 것은 대부분 “공안사건”으로 분류되는 정치범들의 경우이다. 그중에서도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에 침해되는 양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기관들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당하며 최소한 48시간 정도 외부와 연락하는 것이 차단된 채 억압적인 수사를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속된 기간은 법률상 구속기간의 제한을 정하는데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그리고 법원에 의하여 영장이 발부되면 비로소 가족들에게 통지를 해 준다. 그리고 피의자가 영장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변호인이 검찰청이나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청구를 해도 며칠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안전기획부의 경우에는 거의 2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지하실에 있는 조사실에서 지내야 한다. 그러나 안기부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이나 구속통지서에는 구속장소를 안기부 근처에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기재해 놓는 것이 관례이다. 안기부는 다른 수사기관과 달라서 민간인이 출입하거나 안기부측과 연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안기부에 직접 피의자의 접견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안기부근처의 주자파출소와 중부경찰서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랜 시간을 무조건 기다리게 된다. 주자파출소나 중부경찰서의 경찰관이 인기부로 연락을 하면 안기부는 보통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 피의자와 접견을 하게 해 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끝내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안기부의 접견거부에 대하여 접견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접견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때에도 안기부는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다. 공안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접견을 할 경우, 수사관들이나 교도관들이 그 주위에서 대화 내용을 듣고 대화내용을 기록해 왔으며 안기부의 경우에는 접견 과정에서 계속 사진을 찍는 등 접견의 비밀을 침해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부당한 심리적 영향을 주어 왔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관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이후 약간의 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변호인의 접견을 침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을 하던 그날 부천경찰서는 절도혐의로 구속된 정계택씨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였으며 그 다음날에야 접견을 허용하면서 수사관들이 참여하여 듣고 놀음까지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구치소나 교도소외에는 안기부, 경찰서, 기무사, 검찰청 등에 변호인의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변호인의 접견은 불가

피하게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하게 되고 접견의 비밀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마. 피의자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매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수사관의 질문에 특비권을 행사할 것인지, 대답을 할 경우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로서는 수사도중 그에게 가해지는 고문이나 기혹행위, 모욕적이거나 비인도적인 처우 등에 대하여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 반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의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잘 읽어보는 것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로 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이 종종 법정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후에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서에 찍혀 있는 무인이 그의 것인 한 법원에 의하여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피의자로서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바. 1992년 3월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일부 군부대가 장병들의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여당 후보의 득표를 위하여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사실을 육군 중위 이지문이 폭로하였고 그는 군무이탈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중위의 변호인들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육군 제9사단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재판에서 군사법원 측은 방청객의 출입을 금지하고 일부 변호인들을 헌병을 동원하여 강제로 법정밖으로 끌어내기도 하였다.

8. 국가보안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 -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가. 국가보안법은 남북한의 분단과 적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인권을 제한하고 있고 너무나 강력하게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관한 한 남한에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비중을 가진 법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꾸려나가는 것 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이 법의 위력은 대단히 크다.

국가보안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미국과 소련의 지지를 받는 두 정부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수립된 직후였다. 이 무렵 남쪽에서는 일련의 폭동이 일어나 새로 수립된 정부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내란상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국가보안법은 내란상태가 끝나고 한국전쟁도 종결되어 평화가 회복된 다음 점차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1년 5월 정부·여당은 날치기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전 법률을 그대로 계속 적용하고 개정이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만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는 지금 두 개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 부칙은 규약 제15조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

나.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주요범죄의 유형과 사례

(1)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조항은, '이적단체의 결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조항과 함께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제19조의 표현의 자유, 제22조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중 약 50개의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사형까지 과할 수 있다. 이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하여만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한 규약 제6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법원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국가기밀의 범위를 너무나 넓게 해석함으로써 이 조항이 규약 제19조가 정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침해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3) 잠입·탈출죄는 법원에 의하여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은밀히 왕래하는 행위 뿐 아니라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왕래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잠입"과 "탈출"이라는 이름으로 남한과 북한사이의 단순한 이동을 처벌하는 이 조항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권리를 보장한 규약 제12조 제2항,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규약 제12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4) 찬양, 고무, 동조, 이적단체구성, 이적표현물 제작죄 조항은 국가보안법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조항으로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예술 등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북한을 지지하거나 그에 대하여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단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는데 그 내용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비난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허다하다.

이 조항에 의하여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포함한 저작들, 레닌의 저작과 그밖에 트로츠키와 카우츠키, 로자 톡셈부르크, 투카치, 그람시, 모리스 득, 레오 휴비만, E.H. 카, 프란츠 파농, 파울로 프레이리, 사미르 아민, 마르쿠제, 루이제 린저, 부루스 커밍스 등 오늘날 서구에서 사회과학의 고전적 저작으로 인정되는 많은 책들을 출판하고 읽었다는 이유로 지식인들이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소련이나 서구, 중국의 노동운동과 공산주의의 역사, 북한의 사정이나 역사,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에 대한 책들, 혹은 북한에서 출판된 문학작품들을 출판하고 읽거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아 왔다.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아 금서로 되어 있는 도서는 1990년 말 현재 376종이며 그후에 더욱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도서를 출판한 출판사, 판매한 서점의 주인과 그것을 구해서 읽거나 보관한 사람은 모두 처벌된다. 그외에 미국의 대한정책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거나 미군이 남한에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의 철수를 주장하는 내용, 남한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에 반대하여 연방제통일안을 지지하는 것 등이 모두 이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었다.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에서는 국립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학위논문으로 심사받고 통과된 학술논문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어 충격을 주었다.

(5) 회합. 통신죄 조항에서도 법원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북한외에도 해외에 있는 많은 교포단체와 개인들을 반국가단체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이때 반국가단체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는 데에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는 일은 없다.

북한은 물론 국내외의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과 만나고 통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이 조항에 의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를 보장한 규약 제19조 제2항은 한국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6) 불고지죄 조항은 규약 제18조가 보장한 양심의 자유, 즉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다. 구속기간의 연장

1992년 4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의 범죄에 대하여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위헌이고 구속기간은 30일에 그쳐야 하지만 그밖의 조항이 적용된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7조와 제10조가 적용되지 않은 종류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라고 하여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20일이나 더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은 명백히 규약 제26조가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다고 보이며 그 기간은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에서 규약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g)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현실과 괴리된 국가보안법 (이중기준의 적용)

최근에 통일교주 문선명씨는 정부의 시진히기류 반기니 시후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채 그 수행원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 일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문익환 목사에 대한 가혹한 처우를 비교해 보면 정부는 이중기준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또 국제연합 헌장과 최근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정신 및 내용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한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거나 통일을 향한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대내적으로 국민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된다. 정부는 몇년전부터 북한 및 공산권에 관한 자료를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서울 시내 등 전국 곳곳에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센터에 가면 북한은 물론 공산권 국가에서 출판된 각종 책, 신문, 잡지 등을 원본 그대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북한에서 만든 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책들을 시중의 서점에서 구입하여 읽으면 범죄로 처벌되는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몇년 동안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텔레비전은 “남북의 창” 또는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북한의 사정을 소개하고 북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러한 내용의 북한영화나 텔레비전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계 (별첨 ‘반바보고서’ 참조)

9.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8조

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자본주의체제를 반대하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 자유에 대한 침해는 규약 제18조 제3항이

인정한 사유를 아주 넓게 해석하는 법률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중인 사람들의 경우에 법무부는 법무부령인 "수형자 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전제한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행정법에 정한 일체의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장기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에게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향제도"는 명백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보안관찰법은 모든 처벌을 다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행정처분에 의하여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결정하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포함한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등 주위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규약 제12조, 제17조, 제18조 등에 위반하고 있다.

다. 학생들에 대한 종교교육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학교에서도 학생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특정 종교를 믿는 부모의 경우에 그 자녀가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믿는 것과 다른 내용의 종교교육을 학교에서 받게 되므로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10. 표현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9조, 제25조 (b)

가. 국가보안법 (별항 참조)

나. 제3자 개입금지규정

이 조항들은 1980년 12월 31일 군사쿠데타로 구성된 국가보위법회의에서 만든 것이다. 이 조항들은 근로자들을 도와 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이용되었을 뿐이며 사용자의 편을 드는 제3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된 일은 없다. 이 조항들의 구성요건은 "조종, 선동, 방해,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 개입" 등과 같이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권을 침해

하는 데 남용되었다. 이 조항들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부당하게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여러 비판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0년 1월 15일 이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선언하여 이 조항들에 대한 더 이상의 문제제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근로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빙울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제3자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다. 영화, 공연, 음반 등에 관한 사전검열

헌법이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인문·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러 법률(공연법, 영화법, 음반법, 정간물등록법, 방송법)은 실제로 사전 허가나 검열 제도를 정하여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규약 제19조에 위반된다.

라. 기밀보호법제의 문제점

마. 정부가 독점하는 교과서제도

바. 각종 선거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

사. 알 권리(정보공개)

11.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1조

가. 집회의 사실상 허가제도

집시법상의 금지통고 규정에 위반하여 집회를 연 경우에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은 신고된 집회 시위가 금지통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을 선의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집회의 내용과 주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해당법규를 차별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금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집회에 정장소 등을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을 강제연행함으로써 사실상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나. 진압과정의 무분별한 폭력행사

강경대와 김귀정의 사망사건에서 보이듯이 정부는 일단 불법이라고 규정한 집회, 시위에 대하여 무장한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진압을 하여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집압과정에서는 대량의 최루탄이 발사되는 것은 물론이고 쇠파이프와 방패를 무기로 사용하며 시위대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도 한다. 또 권총이나 M16 소총을 발사하는 경우도 있다.

12. 참정권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5조

가. 노동조합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자유를 심기하게 침해하고 있다. 반면 법률에 의하여 기업과 사용자 및 그들의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고 또 정치자금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독 노동조합에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선거법은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등의 부재자투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나 여야당 참관인의 참관 등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규약 제25조에 위반하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사실을 부인 할 뿐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1960년 5월의 군사쿠데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었으며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부칙 제2조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기는 1992년 6월 30일 안에 하기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상반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2년 1월 10일 대통령은 위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1992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한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피선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라. 각 선거구간의 선거인 수 차이는 규약 제25조(b)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예: 지난 국회의원선거시 서울 구로갑 238,346명 -

13. 생명권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6조

가.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이래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 의문사의 피해자들은 주로 반정부활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이거나 근로자들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기관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증거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수사당국은 대부분의 사건이 자살이라고 주장해 왔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법률들은 매우 광범위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형법에서는 모두 18개 조문에서 사형을 최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모두 45개 조문에서 사형을 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모두 50개 이상의 범죄유형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형을 광범위하게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 제도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한 규약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형을 중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일단 사형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6월이내에 형집행을 명령해야 하고 장관의 명령이 있는 날부터 5일이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확정일부터 집행일까지의 유보기간을 두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재심을 청구 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몇몇 정치적 사건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마자 형을 집행하여 사형수가 사면이나 감형, 또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라. 생명권의 위협을 받는 주된 계층의 사람들은 근로자들이다. 우리나라는 열악한 근로 조건아래에서 근로자들의 강도높은 노동에 의하여 경제성장을 이루해 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마. 다수의 근로자가 생명권의 위협을 받는 또하나의 분야는 선원들이다. 선원들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에 의하여 매우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밖에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위생,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상급선원들의 폭행 또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중 선박의

침몰 등과 같이 원인이 명백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안전사고 또는 자살로 처리되어 가족들의 항의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14. 고문 등의 금지와 신체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7조, 제9조

가. 우리나라의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들이 고문 또는 그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직접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생명을 잃게 하는 고문이 많이 일어났다. 최근에는 봉동이나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그밖의 폭행과 위협, 잠안제우기, 오랜 시간동안 서 있게 하거나 발가벗긴 상태에서 신문하기, 모욕을 주기 등 여러 형태의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는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 또는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되는 사람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대부분 피의자의 자백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많은 고문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는 검찰과 경찰, 안기부, 국군기무사, 마약관련 기관 등 거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정치범을 주로 체포, 신문하는 안기부이다.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피의자의 호소가 잇따라도 안기부에 대하여 공정하게 조사를 할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다.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연행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장에 의한 구속과 신문으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은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강제연행한 다음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그 자백을 근거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라는 요건을 넓게 해석하여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일단 구속이 되면 기소되기 전에 일반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최고 30일까지,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최고 50일까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오랜 기간동안 쉽게 구속할 수 있는 제도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신문하는 기관과 그를 유치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피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 없게 되고 수사기관은 구속기간 중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자기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손쉽게 가혹행위를 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마. 검사는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사실상 수사를 위하여 며칠씩 강제연행하여 불법구속하는 것은 검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관행이다. 더구나 고문 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안기부나 경찰청(과거의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은 구속장소가 없으면서도 장기간 피의자를 유치하여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소들은 검사의 유치장 감찰임무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구속기간 중 변호인은 물론 가족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일이 많이 있다. 이처럼 민간인 또는 공정한 제3자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환경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쉽게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가혹행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 피의자가 고문이나 그밖의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폭로되어도 당국은 언제나 그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거의 드물다.

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여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또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의 자백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공안사건에서 심하다.

자. 수사기간은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려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다음 48시간 혹은 그 이상 조사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그 자백을 근거로 영장을 냉부받고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그 때에야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모든 불법수사와 인권침해의 근원이 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안기부에 의하여 피의자가 연행되면 대개 안기부지하실에 갇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 채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이압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는 가족과 연락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연락, 접견하는 것이 금지

된다.

차. 수사기관이 검사를 통하여 판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면 이에 대하여 심사하는 판사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사기록만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판사가 확인할 길이 없다.

카. 영장 발부 전의 불법구속기간을 빼고도 일반형사사건에서는 30일, 국가보안법사건에서는 50일간 구속하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조사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자백하도록 추궁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가혹행위를 동반하거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강요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피의자는 거의 없다.

타. 법원에 의한 구속기간연장에 대하여 법원이 적절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구속기간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대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형식상 이유만을 붙여 기간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한번 구속기소된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는 합계 6개월, 제2심에서는 합계 4개월을 넘어 구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 재판을 하려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그런데 신속한 재판과 장기구속을 막기 위한 구속기간의 제한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제1회 공판이 시작되는 것은 기소 또는 항소로부터 보통 2달 내지 3달이 지나서이며 그때부터 2주 내지 4주 정도의 간격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사건이 복잡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하려면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한 다음 증거조사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 대신 구속기간만료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조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종결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파. 최근에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속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의 수사와 재판관행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하. 수사와 재판은 실제로는 구속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구속되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다음에는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자동적으로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가족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을 모르거나 절차를 청구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보석의 경우에는 정부 보고서의 설명과 달리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너무 많은 데다가 이러한 예외사유, 예컨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주거가 부정할 때등의 사유를 법원이 넓게 해석하여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5. 재소자의 인도적 처우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0조, 제14조 제2항, 제3항 (b)

가. 재소자들은, 미결수와 기결수를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하지 않는 처우를 받고 있다. 행형법 등은 1955년 국제연합이 채택하여 모든 가맹국에게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최저기준규칙")에 크게 미달하며 많은 부분에서 비인도적이기 까지 하다. 한편 일반 국민의 감시와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는 재소자들은 수감시설의 열악한 여건에 의하여, 국가와 교도행정당국의 무성의와 무관심에 의하여, 교도담당자들에 의한 비일비재한 폭행과 가혹한 징벌에 의하여 규약 제 10조에 반하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나. 일반적인 상황

행형법은 기결수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미결수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결수들은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을 권리와 규약 제14조 제2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대다수의 수용 시설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제공되는 급식은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저급하며 균형있는 영양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소자들의 주장이다. 재소자들에게 지급되는 의복은 매우 조악하다. 이들은 수감시설 내에서는 물론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감시설 이외의 곳에 갈 때에도 수의를 입어야 하는데 이 옷들은 누구든지 재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남자기결수들은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하고 있다.

다. 규율과 징벌

피구금자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는 대부분 징벌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다. 그중 금치는 보통 징벌방이라고 하는 작고 창문이 없는 방에 가두는 것인데 여러 계구를 사용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주는 경우가 많다. 감식은 징벌방에 가두어 둔 채 식사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감량하여 주는 것이다. 금치와 감식은 그 자체 비인도적 처우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형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교도관들에 의한 폭력과 고문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정한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소자들은 실내에서 함부로 자리를 벗어나거나 잠을 자서는 안되며 책을 입수하거나 읽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을 할 수 있다. 또 위 규정은 감식 또는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취침시간 외에 침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기상후 세면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취침시간까지 정좌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들은 재소자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육체적으로 지나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명백히 가혹한 것이다.

재소자들에 대한 체벌 등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징벌은 주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재소자들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감자에 대한 징벌이 가혹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수감자가 징벌에 대하여 이의하고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지금의 법체제에서 징벌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밖에 없는데 이 절차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미 징벌은 집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법의 보호밖에 방치되어 있다.

라. 위생과 의료

행형법에는 의료진의 자격과 수, 여자 수용시설의 산전 산후 조치에 필요한 설비 및 유자 격자를 둔 육아시설의 설치, 의무관의 임무와 광범위한 권한 등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거의가 빠져 있다. 재소자들에 대한 보건의료 진료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마. 접견과 서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참조)

가족 또는 친지의 접견은 기결수는 물론 미결수에 대하여도 법률상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 무죄의 추정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도 가족이나 친지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접견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접견시간이 1회에 30분 이내로 한정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5분 내지 10분 정도만 허용된다. 미접수의 경우는 하루에 1회 접견이 허용되나

징역형을 받은 기결수의 경우는 원칙으로 1월에 1회로 제한되어 있고 점차 증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언론인이나 그밖에 수감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일반인의 경우에는 거의 접견이 불가능하다. 언론인 등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은 변호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안을 방문할 수 없는 점과 함께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또한 그것이 은폐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서신의 수발 역시 수용시설측에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또 행정법 시행령 제70조는 교부를 불허가한 서신은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소자가 부친 서신이나 재소자에게 온 서신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바. 집필의 허가

행정법은 피구금자가 집필할 수 있는 경우에 칸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관행에 의하면 재소자는 필기도구의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며 서신을 포함하여 어떤 내용의 것이든지 집필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수감자들이 집필의 허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재소자인권수호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심지어 재판의 준비를 위한 집필마저도 거부당한 일이 있다. 이러한 처우는 매우 가혹할 뿐 아니라 규약 제14조 제2항 (b)호가 보장한 변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사. 도서열독

행정법 제33조는 “수형자가 도서의 열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들은 기결수와 미결수를 막론하고 특히 정치이념서적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 등을 입수하여 읽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열독이 금지되는 도서에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한 이른바 “이적표현물”的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치별받은 도서는 물론 법무부 스스로 만든 금서목록에 해당되는 도서 등 600여종 이상의 도서를 열독금지 대상으로 하여 재소자에 대한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밖에도 반정부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서적, 출판물, 유인물 등에 대하여 수용시설측이 임의로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적표현물을 읽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재판에서 스스로 변호하기 위하여 그 이적표현물을 반입하여 읽는 것이 금지되는 예도 있다. 일반신문의 반입은 허용되고 있으나 신문기사를 수용시설측이 임의로 삭제하여 버리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수용시설측이 도서의 반입을 불허한 데 대하여 재소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많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각종 정치범들중에는 학생과 지식인등 도서의 열독과 집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열독과 집필의 금지는 특별히 가혹한 처우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항의에 수용시설측은 강압적인 제재를 통하여 충돌사태로 번지기도 한다.

재소자들이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아. 분류처우

법무부에서 제정한 "교정누진처우규정"("처우규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 본인의 사상과 상관없이 "사상확신법"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어 있으며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수형기간 동안 처우의 완화나 가석방 또는 귀휴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소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과 양심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매우 가혹한 처우라고 평가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장기수들은 가석방이나 사면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한편 "전향"을 하지 않은 장기수들은 2년이상 독거수용을 하지 못하게 한 행형법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독거수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비전향수는 출여와 취업이 금지되어 1명미만의 방안을 벗어날 수 없고 출여와 취업으로 인한 여러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처우규정에 따라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접견회수, 급여, 교육과 기회 등의 각종 처우면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모든 혜택이 기부된다.

자. 작업

작업에 복무하는 수형자들은 작업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일반인이 노동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최저수입에도 훨씬 못미치는 액수이고 작업 중 사망, 부상 등 재해를 입는 경우 미미한 금액의 위로금과 조위금을 지급받는 이외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차. 교도소 등에 대한 감독과 권리구제

교도소 등에 대한 감독과 권리를 침해 당한 재소자들이 소송 등에 의해 구제를 받는 것은 실효성있게 이행되거나 보장되고 있지 않다. 수용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에 민간인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특히 안기부는 심지어 국회나 감

사원의 감독 조차도 받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기부가 임연히 사람을 구속하여 수용하는 시설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한의 재소자들은 최저기준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처우는 규약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수용시설안에서 사실상 이루어지는 가혹행위등에 대하여 재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행형법 등 관련 규정은 최소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재소자들에게 가하여지는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조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와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의 수감제도는, 법령의 선언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이지도 응보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데 크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가 1990년 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교도소 등에서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강압적으로 변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정부가 범법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중오감을 부추기는 듯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규약 제10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처우문제

16.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의 금지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8조

가. 고전적인 의미의 노예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약 제8조 제3항(a)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의 경우에는 남한에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있다.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의 뜻은 명백하지 않으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조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의 정의를 원용한다면 남한에는 강제노동이 존재하고 있다.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 제1조는 "정치적 이익이나 교육으로서의 수단 또는 정치적 견해나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a) 및 "동맹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제재"(d)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강제노동도 금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강제노동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규약이 금지한 강제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결과가 된다.

다.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처벌

노동쟁의조정법은 근로자들의 파업에 친하여 많은 제한을 가지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과 법원은 쟁의로 인하여 그 사용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방해가 일어난다는 이유로 이를 넓게 해석하여 중한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거나 쟁의중에 연집회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금지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집시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근로자들이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단체로 거부하는 행위도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다. 이와 같은 법률과 법적용의 간행은 모두 국제노동기구 제105호 조약이 금지하는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제재”, 즉 강제노동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며 규약 제8조 제3항 (a)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선원의 강제노동

선원들의 경우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는 등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해야 할 것은 밀항단속법의 문제이다. 이법은 대한민국이외의 지역에서 선박으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이 지정한 시간안에 귀선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이선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박을 무단 이탈한 이상 이탈 또는 귀선하지 않은 이유나 목적을 불문하고 모두 이선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승선중 질병에 걸리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견디지 못한 선원이 선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승선계약을 해제하고 조기귀국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공관을 찾아가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조차 이선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곤경에 처한 국민에게 법적 구조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이처럼 법률을 선의로 적용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선원들은 일단 승선하여 우리 영해를 벗어난 이상 아무리 선원생활이 견디기 힘들다고 하여도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 하선할 수 없고 그곳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결

국 선원생활을 계속하면서 노동을 강제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17. 거주·이전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2조, 제14조 제2항

가.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국금지 사유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정부당국에게 자의적으로 특정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침을 염이놓고 있다. 또한 출국하려는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기는 커녕 기소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단지 수사의 필요에 의해 출국을 금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규약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출국금지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출국금지대상자는 자신이 출국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공항등에 나가서 출국절차를 밟으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돼 출국을 하지 못하고 예정된 일정을 빠꾸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 주택의 강제철거

국민들은 심각한 주택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정부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거나 서울 근교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곳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 또는 민간기업에게는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들은 도시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중산층 이상이 살게 될 고급 아파트를 건설하는 수가 많다. 이 경우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반면 철거되는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 그 곳을 떠나 어디엔 가 다른 주거를 찾아야 한다.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많은 경우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특히 철거되는 건물에 세들어 살던 사람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더욱 고통을 느끼게 된다. 주택이 부족해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현실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맞이줄 주택은 많지 않다. 이들은 주택건설자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거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며 철거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찰의 비호를 받는 폭력배들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해 강제철거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철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폭력배들에 의해 수없이 부상을 입기도 한다. 이상에서 본 정부의 주택정책과 결부된 강제철거의 진행은 주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사생활을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7조

가. 국가기관에 의한 사생활침해

경찰과 민간 및 군 정보기관들은 주로 반정부인사들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사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군 복무 중 국군보안시령부("보안사")에 연행돼 이른바 '수사협조'(강요에 의해 비밀정보원으로 활동하는 것)를 해오던 윤석양 이병은 1990년 10월 4일 보안사가 수많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보안사는 사찰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청, 우편물검열, 불법주거침입, 불법 압수·수색과 미행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윤이병의 폭로가 있은 뒤 정부는 국방부장관과 국군보안사령관의 책임을 물어 이들을 해임하고 앞으로는 군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곧 거짓임이 드러났다. 1991년 3월 16일 국군기무사령부 서울분실장은 전국 11개지역 기무부대에 '긴급내사의뢰'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공문에 따르면 기무사 서울분실은 학생운동권 출신 12명을 '의식화용의자'라고 밝히고 이들의 가족관계, 배후사상과 성향, 연고지 주민의 평, 사회문제권 인 접촉 등 평소 언동 등을 파악해 보고 토록 지시했다.

나. 우편물의 검열

임시우편단속법(1948.12.1 법률 제11호) 상 대통령은 우편물이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검열을 위해 체신부 산하에 우정연구소가 설립돼 전국의 우체국에서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 우정연구소는 안기부로부터 김열 대상자 명단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한국전쟁 전에 공산주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제정되었다. 그 후 40여년이 흘러 공산주의의 위협이 전혀 없어졌다. 그럼에도 이 법이 행정부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나 통제 없이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우편물을 검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규약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신서에 대한 자의적 침해에 해당한다.

다. 도청

경찰과 정보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일상적으로 면전 대화와 전화통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안기부 서울분실의 기술보안단이 도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도청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라. 행정전산망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은 모든 국민에 대한 78개 항목의 인적사항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경찰청사에 설치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정보는 여당 정치인, 기업체, 언론기관, 의료보험조합, 금융기관 등에도 제공 또는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마. 피의사실의 공표

형법 제126조는 기관이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일상적으로 위 법을 위반하며 반정부인사가 피의자가 된 때에는 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통해 국민대중의 지지를 잃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까지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에게는 이 위반행위를 수사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들은 그러한 수사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19. 여성에 대한 차별 - 관련된 규약의 조항: 제3조,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가. 여성을 차별하는 법

1989년 12월 가족법이 개정되어 많은 남녀 불평등 조항이 개정되는 등의 결과로 여성의 법적 평등은 대체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 남아 있다.

가족법은 여전히 호주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또한 이혼시 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부의 재산을 공동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이혼한 여자가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엄격한 입증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어 여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여성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10 내지 55%의 누진세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15 내지 60%의 누진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적법은 최우선적으로 사람이 출생한 당시에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나라 국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표준으로 삼아 그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 그 사람에게 한국의 국적을 부여한다. 이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규약 제24조 제3항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고용 분야에서의 여성 차별

1988년 4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어 법규정상으로는 고용상의 남녀차별이나 승진, 배치, 임금, 해고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에서는 남녀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분야에 여성차별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너무 약하고 정부가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

다. 보육시설의 미비

여성들의 생산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차별요인은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의 태부족이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1991년 1월 14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은 민간보육시설에 엄격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상당한 시설을 갖춘 대규모 민간보육시설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난한 지역의 기존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지 못한채, 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기는 어려워 폐쇄될 우려가 크다.

라. 성폭력의 증가

최근 성폭력과 성범죄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서 피해받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성폭력과 성범죄의 증가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향락산업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 나머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초래된 향락산업의 번창과, 대신문사가 발행하는 스포츠신문, 주간지등이 경쟁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담음으로 인하여 조장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 결사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2조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실제상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적 결사와 노동운동단체의 결성을 제한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기존의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의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